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4년 7월 5일

나. 회부일자 : 2004년 7월 5일

3. 제안 이유

- 바이오산업을 21세기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하여
- 기 설립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 내용

- 제명변경
  -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 법인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 ”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으로 변경 (제2조)
- 사업의 범위를 전통의약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서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 관련산업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산업의 연구개발·  
창업보육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센터 관련산업의  
지원·육성이 가능토록 함 (제5조)

## 5. 검토 의견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바이오산업을 충북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업내용에 따라 산발적으로 설치한  
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재단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충청북도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04. 3. 4설립)”와 향후 설치할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사업장 위치가 서로 다른 ‘전통의약산업센터’와 “보건  
료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수행해 나가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